

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. 4. 21. ----- 사하구청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04. 4. 21.
- 다. 상 정 일 자 : 2004. 5. 4.(제118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상정,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사회복지과장 정석한)

가. 제안이유

-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으로 건립 중인 구평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가 2004. 4월중에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신설하고, 기타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구평종합사회복지관 신축에 따른 복지관의 명칭과 주소를 조례에 신설 (안 제2조제5호)
- 기타 용어정비(안 제5조제3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

- 본 조례 개정건은 2004. 4월중 준공예정인 구평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명칭과 주소를 신설하고, 기히 사용중인 각종 용어를 정비보완 통일하므로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식제고는 물론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판단되며, 특히 관련법령에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 명문화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조례개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